

<중국사무소>

중국문화산업 이슈페이퍼

2008년 4월1주

KOCCA 중국사무소

□ 목 차

1.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3

1.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 령 제34호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은 이미 2007년 12월26일에 신문출판총서 제2차 서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발표되었으며 2008년 4월15일부터 실시한다.

신문출판총서 서장 류빈제 (柳斌杰)

2008년 2월 21일

제1장 총칙

제1조 전자출판물 출판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출판 사업의 건강한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 <출판관리조례>, <국무원 확실하게 보류해야할 행정 심사 항목에 대해 행정 허가 설정 관련 결정> 그리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제에서의 전자출판물 제작, 출판, 수입활동은 본 규정에 따른다. 본 규정에서 언급된 전자출판물은 데이터 코드 방식으로 지식성, 사상성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에 대해 편집한 후 고정 적인 물리형태의 자 (磁), 광 (光), 전 (电) 등 매체에 저장하여 읽기 전용 롬 (CD-ROM, DVD-ROM 등), CD-R, DVD-R 등, 수정가능한 롬 (CD-RW, DVD-RW 등),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집적회로카드 등을 포함한 전자열독, 디스플레이, 방송설비를 통해 사용되는 대중 전파매체이며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한 기타 매체 형식을 말한다.

제3조 전자출판물에는 <출판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에 언급된 금지내용이 들어있어서는 안된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에 대한 감시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신문출판 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전자 출판물의 출판활동에 대한 감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국가는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에 대해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허가가 없이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자 출판물의 출판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출판단위 설립

제6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를 설립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1) 전자출판물 출판 단위 명칭, 규정이 있어야 한다
- (2) 신문출판총서의 인정을 받은 주관, 주최단위가 있어야 한다;
- (3) 명확한 전자출판물 출판업무 범위가 있어야 한다;

- (4) 200만위엔 이상의 등록자본이 있어야 한다;
 - (5) 업무범위의 수요에 적합한 설비와 업무장소가 구비되어야 하며 고정적인 업무 장소 면적이 200평방미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 (6) 업무범위의 수요에 적합한 조직기구가 있어야 하며 직원 중 최소한 2명 이상은 중급 이상의 출판 전문 직업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 (7)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상기 열거한 조건 외 국가 전자 출판물 출판단위 총량, 구조, 분포에 관한 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를 설립함에 있어서 주관단위의 동의를 받은 후 주최단위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심사 허가를 받은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제8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 설립을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조건에 따라 신청표를 작성하며 출판단위의 명칭, 주소, 자본구조, 자금출처 및 금액, 출판단위의 주관, 주최단위 명칭과 주소 등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2) 주최단위, 주관단위의 관련 자격 증명 서류;
- (3) 출판단위 장정;
- (4) 법인대표 또는 주요 담당자 및 본 규정 제6조에서 요구한 관련 인원의 자격증명과 신분증명;
- (5) 가능성 논증 보고;
- (6)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본검증 기구가 제출한 등록자본 검증 증명서;
- (7) 업무장소 사용 증명;

제9조 신문출판총서는 전자출판물 출판단위 설립 신청을 접수한 후 90일 내에 비준 또는 불비준 결정을 통보해야 하며 직접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이 서면으로 주관단위에 통지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 설립을 신청하는 주관단위는 비준통지를 받은후 60일 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등록하여 신문출판총서가 발급하는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가지고 소재지 공상행정 관리부문에 등록하며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제11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등록 일부터 만 180일 내에 출판활동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등록을 해제하며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문출판총서에 등록한다.

불가항력적인 원인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상기 제기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연기 신청을 제출한다.

제12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 명칭, 주관단위 또는 주최단위, 업무범위, 자본구조, 합병 또는 분립에 대해 변경할 경우 본 규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 수속을 다시 진행하며 원 등기 공상행정 관리부에서 상응한 등록 수속을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 담당자에 대해 변경할 경우 주관, 주최 단위의 동의를 거친 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며 원 등기 공상행정 관리부문에 가서 변경 등록수속을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관련 변경 등록 사항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한다.

제13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출판활동을 정지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서 취소 등록 수속을 한 후 원 등기 공상행정 관리부문에 가서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관련 취소 등록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한다.

제14조 연속형 전자출판물 출판을 신청할 경우 주관 단위의 동의를 거친 후 주최단위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은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심사허가를 받는다.

본 규정에 언급된 연속형 전자출판물은 고정적인 명칭, 用卷, 기, 첩 또는 년, 월 순서 번호가 있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 출판되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제15조 연속형 전자출판물 출판을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의 명칭, 刊期, 매체형태, 업무범위, 독자대상, 프로그램 설정, 학자 집안 등;

(2) 주관 단위의 심사허가 의견.

신문, 간행물 발행도 포함한 연속형 전자출판물 출판을 신청할 경우 신문, 간행물 샘플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비준을 받고 출판하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이 새로 추가하거나 연속형 전자출판물의 명칭, 刊期, 출판 범위를 수정할 경우 본 규정 14조, 1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17조 출판 행정부문은 전자출판물 제작 단위에 대해 등록제 관리를 실시한다. 전자출판물 제작단위는 단위 설립 등기 및 관련 변경 등기 당일부터 30일 내에 단위 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 담당자 이름 및 영업허가증 복사본, 법인대표 또는 주요 담당자 신분 증명서류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언급된 전자출판물의 제작은 창작, 가공, 디자인 등 방식을 통해 출판, 복제, 발행에 사용되는 전자출판물 프로그램 자원의 경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장 출판관리

제 1 8 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편집책임제도를 실시하며 전자 출판물의 내용이 관련 법규, 규정제도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제 1 9 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매년 1 2 월 1 일전까지 다음해 출판계획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은 후 신문출판총서에 등록한다.

제 2 0 조 전자출판물 출판은 중대한 소재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안전, 사회안정 등에 관련된 중대한 소재, 그리고 중대한 혁명 소재와 중대한 역사소재는 신문출판총서 소재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은 중대한 소재를 출판해서는 안된다.

제 2 1 조 전자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반드시 규정에 따라 중국 표준 책 정리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동일한 내용, 부동한 매체형태와 격식의 전자출판물은 각각 부동한 중국 표준 책 정리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연속형 전자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반드시 규정에 따라 국내 통일된 연속 출판물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중국 표준 책 정리번호로 연속형 전자출판물을 출판해서는 안된다.

제 2 2 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어떠한 형식으로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 본 단위의 명칭, 전자출판물 중국 표준 책 정리번호, 국내 통일 연속 출판물번호를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판매해서는 안된다.

제 2 3 조 전자출판물은 국가의 기술, 품질표준과 규범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전자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전자출판물 매체의 인쇄표지면 또는 장정된 현저한 위치에 전자출판물 제작, 출판단위 명칭 그리고 중국 표준 책 정리번호 또는 국내 통일된 연속 출판물 번호 및 바코드, 저작권자 이름 및 출판일자 등 기타 관련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 2 4 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경외 저작권자가 권한을 수여한 전자출판물 출판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신청해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은후 신문출판총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 5 조 경외 저작권자가 권한을 수여한 전자출판물 출판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할 서류 :

- (1) 신청서, 전자출판물의 명칭, 내용소개, 저작권자 이름, 저작권자 기본 상황 소개 등 ;
- (2) 신청단위의 검토보고 ;
- (3) 샘플 및 필요한 내용 자료 ;

(4) 신청단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의 저작권 계약 등기 증명 문서.

경외 저작권자가 권한을 수여한 전자게임 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게임 주요 인물과 주요 배경 화면 자료, 대리 기구 운영허가증, 발행 계약서 및 발행기구 비준 발급 허가증, 게임 문자 각본 전문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26 조 신문출판총서는 경외 저작권자가 권한을 수여한 전자출판물 출판 신청을 접수한 후 20일내에 비준 또는 불 비준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경외 저작권자가 권한을 수여한 전자출판물을 출판을 심사할 경우 전문가 심사팀을 구성해야하며 국가 총량, 구조, 분포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27 조 경외 저작권자가 권한을 수여한 전자출판물은 전자출판물 매체의 인쇄 표지면 또는 장정의 현저한 위치에 수입 출판 비준 문건 번호와 저작권 라이선싱 계약 등록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28조 출판 비준된 경외 저작권자가 권한을 수여한 전자출판물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 출판할 경우 본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경외 저작권자가 권한을 수여한 전자게임 테스트 디스크 및 경외 인터넷 게임 작품단말기 프로그램 디스크를 출판할 경우 본 규정 제25조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와 경외 기구가 합작하여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주관단위의 허가서 받은후 소재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은후 신문출판총서의 심사를 받는다. 신문출판총서는 공동 출판할 전자출판물 소재신청을 받은후 20일 내에 비준 또는 불 비준에 대한 결정을 통보해야 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제31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외국 기구와 전자출판물 공동제작을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서에 합작 출판할 전자출판물의 명칭, 매체형태, 내용소개, 합작 쌍방 명칭, 기본 상황, 합작방식 등을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합작 출판할 전자출판물 관련 문자 내용, 그림 등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2) 합작 의향서;
- (3) 주관단위의 심사 의견

제32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와 경외 기구가 합작하여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전자출판물 출판 30일 내에 샘플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기해야 한다.

제33조 출판단위가 본 판에 맞춰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소재지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행정 부문에 신청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은후 전자출판물 중국 표준 책 정리번호와 복제 위탁서를 발급하며 신문출판총서에 등록한다.

제34조 출판단위가 본판에 따른 전자출판물 출판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본판 출판물을 제출해야 하며 출판물 출판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는 본판에 따라 출판하는 전자출판물의 명칭, 제작단위, 주요내용, 출판시간, 복제수량과 매체형식 등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제35조 전자출판물 발행 전 출판단위는 국가 도서관, 중국판본도서관과 신문출판총서에 무료로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제36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 직원은 국가에서 규정한 출판 전문 직업 자격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 단위의 사장, 편집장은 국가에서 규정한 임직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 단위의 사장, 편집장은 신문출판 행정부문이 조직하는 직책교육에 참가해야 하며 직책 교육 합격증서를 받은수 취직 가능하다.

제37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국가 통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수입관리

제38조 전자출판물 완성품을 수입할 경우 신문출판총서가 비준한 전자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은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전자출판물 수입을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자료를 신청해야 한다:

- (1) 신청서는 수입 전자출판물의 명칭, 내용소개, 출판자 명칭, 주소, 수입수량 등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 (2) 주관단위 심사 의견;
- (3) 신청단위 수입 전자출판물 관련 검토 보고;
- (4) 수입 전자출판물 샘플 및 필요한 내용 자료.

제40조 신문출판총서는 전자출판물 수입 신청을 접수한후 20일 내에 비준 또는 불 비준 결정을 통보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수입 전자출판물을 심사평가함에 있어서 전문가 심사위원을 조직해야 하며 국가 총량, 구조, 분포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1조 수입 전자출판물의 외부 포장에는 표지를 붙여야하며 수입 비준 문서번호 및 증문으로

된 출판자 명칭, 주소, 저작권인 이름, 출판날자 등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5장 비매품 관리

제42조 전자출판물 비매품 복제를 위탁할 경우 위탁측 또는 위탁을 받는 측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전자출판물 비매품의 사용 목적, 이름, 내용, 발송대상, 복제수량, 매체형식 등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샘플을 첨부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비매품의 내용은 공익홍보, 기업 단위 업무 홍보, 교류, 상품 소개 등에 제한되며 가격을 정해서는 안되고 형태를 바꾸어 판매하거나 기타 상품에 끼워 팔아서는 안된다.

제4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전자출판물 비매품 복제 위탁 신청을 받은후 20일 내에 비준 또는 불 비준 결정을 통보해야 하며 비준할 경우 전자출판물 불제 위탁서를 발급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제44조 전자출판물 비매품 매체의 인쇄표지면 및 장정의 현저한 위치에 전자출판물 비매품 통일 편성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번호는 4개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분은 '[']안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약칭; 제2부분은 '전자출판물 비매품'의 문구; 제3부분은 '(')안의 년도; 제4부분은 순서 번호이다.

제6장 위탁복제 관리

제45조 전자출판물, 전자출판물 비매품은 신문출판총서가 비준하여 설립한 복제단위에 위탁하여 복제해야 한다.

제46조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 비매품 복제를 위탁함에 있어서 반드시 복제 위탁서를 사용해야 하며 국가 복제 위탁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복제 위탁서는 신문출판총서가 통일로 인쇄 제작한다.

제47조 전자출판물, 전자출판물 비매품 복제를 위탁하는 단위는 제출한 복제 위탁서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정할 것을 보증하며 복제 위탁서를 직접 복제 단위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전자출판물 비매품 복제를 위탁하는 단위는 복제 위탁서에 대해 그 어떤 형식으로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 양도, 출판해서는 안된다.

제48조 전자출판물 불제를 위탁하는 단위는 전자출판물 복제를 완성한 후 30일 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본 단위 및 복제단위가 사인한 위탁서 두 번째 페이지 및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불제를 위탁하는 단위는 전자출판물 복제 위탁서 네 번째 페이지를 참조하기 위해 약 2년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제49조 전자출판물, 전자출판물 비매품 복제를 위탁하는 단위가 비준을 받은 전자출판물 복제 위탁서를 받은후 90일 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위탁서를 발급한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복제 위탁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7장 년도 심사

제50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년도 심사제도를 실시하는데 년도 심사는 2년에 한번씩 진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전자출판물 출판 단위에 대한 년도 심사를 책임진다. 심사내용은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등기항목, 설립조건, 출판경영상황, 법규준수상황, 내부 관리 상황 등이 있다.

제51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년도 심사에 제출해야할 자료:

- (1) 전자출판물 출판단위 년도 심사 등기표;
- (2) 전자출판물 출판단위 2년간의 총결 보고는 출판 법규 집행 상황, 출판업적, 자산변화 등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 (3) 2년간 출판된 전자출판물 출판 목록;
- (4)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 복사본.

제52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 년도 심하 절차:

- (1)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심사년도의 1월15일전까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년도 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2) 각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내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설립조건, 업무 및 법규 집행 상황 등에 대해 전면 심사를 해야 하며 그 해 2월말전까지 년도 심사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년도 심사 요구에 부합되는 단위를 등기하여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수여한다;
- (3) 각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심사년도의 3월20일 전까지 년도 심사 상황및 관련 자료를 신문출판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53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아래와 같은 상황이 존재할 경우 년도 심사를 잠시 미룬다:

- (1) 본 규정 제6조의 규정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 (2) 출판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 정지 처리기간에 처해있을 경우;
- (3) 심사과정에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 (4) 출판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철저히 정돈하지 못하가 계속 위법행위가 존재할 경우;
- (5) 장기간 정상적인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였을 경우.

년도 심사 연기 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이 확정하며 3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잠시 연기하는 기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전자출판물 출판단위 정돈을 독촉하고 지도한다. 년도 심사 연기 기간이 만료된 후 년도 심사 요구에 부합되는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등록을 비준하며, 여전히 년도 심사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에 대해서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서 등록 취소의견을 제출한 후 신문출판총서가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취소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서 등록 취소 수속을 한다.

제54조 규정에 따라 년도 심사를 받지 않는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에 대해 서면 통보를 하며 그래도 여전히 년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이 등기 취소

의견을 제출하며 신문출판총서는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취소시킴과 동시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에서 등기 취소수속을 한다.

제55조 연속형 전자출판물을 출판하는 단위는 본 규정에 따라 년도 심사를 받는다.

제8장 법률책임

제56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경고 통지서 하달;
- (2) 비평 통보;
- (3) 공개적으로 검토를 받도록 책임을 과한다;
- (4) 수정하도록 책임을 과한다;
- (5) 전자출판물 발행, 복제를 정지할 것을 명한다;
- (6) 전자출판물 회수를 요구한다;
- (7) 주최단위, 주관단위가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수정을 감시하도록 한다;

경고통지서는 신문출판총서가 통일적으로 양식을 제정하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에서 규정을 위반한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에 하달함과 동시에 규정을 위반한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주최단위 및 기타 주관단위에도 한부 발송한다.

본 조례에 열거된 행정조치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제57조 비준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를 설립하거나 전자출판물 출판업무에 종사하며 전자출판물 또는 연속형 전자출판물 명칭, 전자출판물 전문용 중국 표준 책 정리번호 위조 등 행위가 발생한 출판 단위에 대해 <출판관리조례> 제55조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도서, 신문, 간행물, 음반영상제품 등 출판단위가 비준을 거치지 않고 본관 출판물에 따라 전자출판물을 출판하는 행위는 함부로 전자출판물 출판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취급하며 상기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58조 전자출판물 제작, 출판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 아래와 같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56조에 따라 처벌한다:

- (1) <출판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의 금지내용이 들어간 전자출판물을 제작 또는 출판할 경우;
- (2) <출판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의 금지 내용이 포함된 전자출판물을 출판한 단위에 출판 단위 명칭, 전자출판물 전문용 중국 표준 책 정리번호, 국내 통일된 연속 출판물 번호, 바코드 및 전자출판물 복제 위탁서를 판매,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할 경우;

제59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본 단위의 명칭이, 전자출판물 전문용 중국 표준 책 정리번호, 국내 통일된 연속 출판물 번호를 임대, 대출, 판매 또는 기타 형식의 양도행위가 있을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0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60조 아래 행위중 하나가 존재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처벌한다:

- (1)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명칭, 주최단위 또는 주관단위, 업무범위, 자본 구조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립, 주소, 법인대표, 주요 담당자를 변경함에 있어서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심사 수속, 변경 등기 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 (2) 출판 비준을 받은 연속형 전자출판물이 연속형 전자출판물의 명칭, 刊期와 출판범위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심사 수속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 (3) 전자출판물 출과단위가 규정에 따라 년도 출판 계획과 중대한 소재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 (4) 출판단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출판물 샘플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 (5) 전자출판물 수입 경영단위가 본 규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출판물을 수입했을 경우.

제61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법에 근거하여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문출판총서, 국가통계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신문출판통계관리방법>에 따라 처벌을 간한다.

제62조 아래 행위가 존재할 경우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수정 책임을 과함과 동시에 경고통보를 하며 동시에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 (1) 전자출판물 제작단위가 본 규정의 제17조를 위반하고 등록 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 (2)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본 규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중국 표준 책 정리 번호 또는 국내 통일된 연속 출판물 번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3)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출판하는 전자출판물이 국가의 기술, 품질표준, 규범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제23조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 (4)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경외 저작권자가 권한을 수여한 전자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본 규정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5)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와 해외기구가 합작하여 전자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본 규정 제30조 내용에 따라 소재 심사 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본 규정 제32조 내용에 따라 샘플을 제출하여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 (6) 전자출판물 수입 경영단위가 본 규정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7) 전자출판물 비매품 복제를 위탁함에 있어서 본 규정 제42조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제44조에서 전자출판물 비매품 통일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 (8) 전자출판물 출판단위 및 기타 위탁복제단위가 본 규정 제45조부터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립 비준을 받지 못한 복제 단위에 복제위탁을 했거나 복제 위탁서 관리 제도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9장 부칙

제63조 본 규정은 2008년4월15일부터 실시하며 신문출판총서 1997년12월30일에 발표된 <전자출판물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이전에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전자출판물 제작, 출판, 수입 활동에 대한 기타 규정에서 본 규정과 불 일치한 부분에 대해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